

행 정 자 치 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 면제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성남시

관 련 자 성남시 ○○○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11.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성남시 ○○○○
○으로 근무하면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 업무를 총
괄하였다.

성남시에서는 ‘2016년 ○○○○○ ○○○○ 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을
진행하던 중 입찰 결과 적격심사 1순위 업체인 ○○○○(대표 ○○○, 투찰금액
325백만원)이 제출한 실적증명 중복 제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를 진행하
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제76조의 2에 따르면,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청문 및 계
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으나,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업체가 경감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최소 1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 관서에서는 2016. 1. 26. 입찰결과 1순위 업체인 ○○○○으로부터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이 중복되었음을 인지하였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실적증명 발급기관인 경기도 ○○시 ○○○○○와 ○○○○의 확인을 통해 실적이 중복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6. 3. 29. 위 관서 ○○○○ ○○○○의 주재로 해당 업체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청문 결과, 청문주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나 해당 업체의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2016. 2. 2. 포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¹²⁾’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5개월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계약심의회 심의안건을 상정하였다.

따라서, 계약심의회 심의 시 계약법령 위반내용과 계약부서의 확인사실, 청문주재자의 의견, 계약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하고 적법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심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2016. 4. 11. 계약심의회에 배석한 ○○○○○ ○○○○은 상정안건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업체에 대하여 경고나 주의만으로 결정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관련 법령에 경고나 주의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

12) ○○○○은 2014. 11월 개업 후 적격심사 서류를 처음으로 제출하는 것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포기서 제출 전일에서야 실적이 중복되었음을 인지하였다는 진술 내용을 고려

다13)‘ 고 답변함으로써,

계약심의회 위원들은 경고나 주의처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해당 업체의 업무미숙과 함께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 소홀, 기 포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처분하는 것으로 의결하기에 이르렀고, 동 계약심의회 심의 결과를 인용하여 2016. 4. 19. 해당 업체에 ‘경고’처분 결정을 통보하였다.

결과적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절하고 적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어야 함에도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성남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계공무원에 대해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계약담당자 지방○○○급 ○○○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지와 계약심의회 상정 방법에 대해 자문변호사, 계약관련 네이버 예산회계실무 카페, 계약민원콜센터 등에 문의한 결과, 제한여부에 대해 계약심의회에서 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해 면제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법령해석을 잘못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 76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당팀장에게 보고한 결과 이와 같이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진술